

교원인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40조의 3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루터대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개정)

제2조(교원의 종류) ① 교원은 정관 40조가 정하는 교원(이하‘전임교원’이라 한다)과 정관 제40조의 2에 정한 겸임교원 등(이하‘비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012.2.16.개정)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계약제로 임용되는 전임교원이며 해당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한다. (2012.2.16.개정),(2017.1.26.개정)

④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명예교원, 석좌교원, 특임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한다. (2011.7.6.개정),(2012.12.3.개정),(2018.2.27.개정)

⑤ 비정년트랙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17.1.26.신설)

1. 교육중점교원: 교육·학생지도 및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
2.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전임교원
3. 외국어교육중점교원: 외국어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

⑥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행정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 (2022.2.10.개정)

⑦ 전임교원에 대한 평가는 중심평가영역(교육영역, 산학협력영역, 행정영역 중 1영역) 위주로 평가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다. (2022.2.10.개정)

제3조(규정적용의 범위) ① 이 규정 제4조 이하는 전임교원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조 4항이 정하는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45조와 명예퇴직규정,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자격·임용절차·복무·처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비전임 교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2.2.16.)

제4조(임기) 법인 정관에 따라 정하며, 임기 만료 전에 승진 임용될 시에는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

제5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날의 학기 최종일로 한다.

제 2 장 임 용

제6조(임용의 정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019.8.21.개정)

제7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제 1 절 신 규 임 용

제8조(교원자격) ① 본교 교원은 고등교육법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2012.2.16.개정),(2012.7.19.개정)

대 학 교 원 자 격 기 준

학 력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연구경력			
직 명			
교 수	4	6	10
부 교 수	3	4	7
조 교 수	2	2	4

② 신학과 교원은 전향에 해당하는 자로 루터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라야 한다. (2004.11.1. 개정),(2012.2.16.개정),(2012.7.19.개정), (2020.2.13.개정)

③ 전임교원의 임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을 경우 박사학위과정 이수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단, 비정년트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2012.2.16.개정),(2012.12.3.개정)

④ 외국인의 교원 자격은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규정으로 정한다.

⑤ 신학과 이외의 교원은 기독교 한국 루터회 교단 신학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011.7.6.개정),(2012.2.16.개정),(2012.12.3.개정),(2016.3.14.개정)

⑥ 본교 교원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본교 설립 목적에 부합한 자라야 한다. (2012.2.16.신설)

제9조(임용방법 및 시기)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에 임용한다.

제10조(직급제한) ① 대학교원 이외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없다. (2012.7.19.개정)

② 교원의 임용 시에는 교육경력, 연구경력 및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2018.12.12.개정)

제11조(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2.2.16.개정),(2012.7.19.개정),(2013.2.25.개정),(2017.7.17.개정)

3-3-1 교원인사 규정

직 명	기 간
교 수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부 교 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 교 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 교	1

제12조(임용절차) ① 교학처는 공고된 일정에 따라 신규임용지원자를 접수받아 학과 교수회의에 심사를 의뢰하고 학과 교수회의는 지원자를 심사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인원의 4배수를 교원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지원자가 4배수에 미달인 경우 총장은 추천 대상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002.9.27.개정),(2011.7.6.개정),(2016.3.14. 개정),(2018.8.24.개정)

② 교원 인사위원회는 학과 교수회의가 추천한 대상자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상위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인원의 2배수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단, 추천 대상자가 2배수에 미달인 경우 총장은 추천대상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002.9.27.개정),(2011.7.6.개정)

③ 총장은 교원인사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임용대상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13조(심사내용) ① 학과 교수회의는 신임교원 임용규정이 정한 심사표에 의하여 세부전공 적합성,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자질, 경력, 글로벌역량을 평가한다. (2016.3.14. 개정),(2018.12.12.개정)

② 연구실적 최소기준은 채용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8.12.12.신설)

제14조(심사방법 및 심사위원) ① 학과 교수회의는 해당학과 전체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신규임용대상자를 심사하며, 전체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② 외부 심사위원은, 해당학과 교수회의에서 2배수를 교학처장에게 추천하고 교학처장이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2002.9.27.개정),(2016.3.14.개정),(2018.8.24.개정)

제15조(임용의 취소 및 변경) 조회결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관계관청에서 부적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임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연수 계산) 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한다. (2019.8.21.개정)

제 2 절 승진 임용

제17조(최저 소요연수 및 자격) 교원의 최저 승진 소요연수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2.2.16. 개정),(2012.7.22.개정),(2013.2.25.개정),(2013.12.23.개정)(2017.12.22.개정)

1. 최저 승진 소요연수 및 요건

구 분	기간	필수연구업적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6년	논문	국제전문 학술지	SCI급/SCOPUS학술지 (SSCI, SCI, SCIE, SCOPUS)	승진소요기 간 중 600% 이상
			국내전문 학술지	KCI급(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 국내외 일반학술지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독연구 기준임. ※ 상기 논문 이외 본교 교수논문집 신학과 신앙에 논문 3편 이상이 되어야 함.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6년	논문	국제전문 학술지	SCI급/SCOPUS학술지 (SSCI, SCI, SCIE, SCOPUS)	승진소요기 간 중 600% 이상
			국내전문 학술지	KCI급(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 국내외 일반학술지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독연구 기준임. ※ 상기 논문 이외 본교 교수논문집 신학과 신앙에 논문 3편 이상이 되어야 함.					

* 공연예술학과는 공연 1편(주연급)을 심의한 후 논문 1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 실적은 연간 50%를 초과할 수 없다. (2013.2.25.개정),(2013.12.23.개정)

2. 1호의 승진요건 미달시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12.22.개정)

제18조(승진시기 및 정원관리) 교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의 연 2회로 하며, 본 대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직급별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2005.2.17.개정),(2012.12.18.개정)

제18조의2(특별승진) ①교원이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정부가 주도한 중요한 평가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시에서 해당 업무와 관계 없는 교원이 우수학생(학점이 B+이상이 유지되어야 함)을 8명 이상(2년 동안) 유치(최종등록 후 당해연도 10.1일자 재학시)한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승진 할 수 있다. (2022.2.10.개정)

②승진에 필요한 필수연구업적 요건을 충족한 교원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 최소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③특별승진은 본교 재직 시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교원의 특별승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2018.9.10.신설)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을 보류한다.

1.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이 보류되며 휴직기간을 경력 연수에서 공제한다.
2. 징계를 받은 자(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는 승진을 보류한다.
3. 형사상 처벌이 계류 중인자는 승진을 보류한다.

제20조 삭제 (2005.2.17.)

3-3-1 교원인사 규정

제21조(연구실적 심사)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 3인 중 1인은 임용될 자 보다 상위직인 타 대학 교원에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중 2인은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교원 및 전공 주임교수로 위촉한다. 단, 본 대학에 세부전공 교원이 없는 경우 타 대학 교원으로 대체한다. (2013.2.25.개정),(2018.12.12. 개정)
3. 비전공 교원은 연구실적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삭제 (2012.2.16.삭제),(2013.2.25.개정),(2017.12.22.삭제)
5. 삭제 (2012.2.16.)

제22조(연구실적물의 심사 기준)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009.2.9.개정),(2017.12.22.개정)
2. 연구실적물의 인정 및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관리규정의 <별표 2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한다. (2009.2.9.개정),(2012.3.25.개정),(2017.12.22.개정)
3. 삭제 (2012.2.16.)

제23조(승진임용의 종합평가)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심사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반영한다.

1.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2. 연구실적
3. 교내외 루터대학교 사회봉사단 인정 봉사활동 (2017.11.20.개정)
4. 기타 사항

제 3 절 재 임 용

제24조(재임용 기간) 교원의 직급별 재임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직 명	기 간
교 수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부 교 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 교 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 교	1

(2012.2.16.개정),(2012.7.19.개정),(2013.2.25.개정)

제25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의 년 2회로 한다.

제26조(심사 내용)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 교원에 대하여만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기준 미달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교원업적평가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45점), 교육(45점), 봉사(10점)으로 구분하여 총100점으로 하고 각 평점영역 점수를 합산하여 연도별 최소 70점 이상을 합격평점으로 한다.

(2012.2.16.개정),(2013.12.23.개정),(2017.12.22.개정)

2. 연구실적물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를 포함하여 1년 기준 5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갖추어야 한다.
3. 다만, 제2호의 경우 우수 신(편)입생을 2년 기준 8명 유치(최종등록 후 인정)하였을 경우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학교 전체 논문 편수가 대학기관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행정중점 교원이 대학평가, 국책사업, 인증보고서 작성시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2.2.16.개정),(2013.12.23.개정),(2017.12.22.개정),(2018.8.24.개정),(2022.2.10.개정)

제27조(재임용 절차)

-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2012.7.19.개정),(2016.3.14.개정),(2018.8.24.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8.8.24.신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신청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8.8.24.개정)
-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2021.5.14.개정)
 5. 관련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2021.5.14.개정)
-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8.8.24.신설)
- ⑥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심사 시 심사평점 내역이 합격기준의 점수를 받은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 총장에게 임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2018.8.24.신설)
- ⑦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동의된 자를 이사장에게 재임용 제청한다. (2018.8.24.개정)

제27조의 2(구제임용의 평가) ① 재임용 탈락 후 3년 이상 경과한 교원이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구

3-3-1 교원인사 규정

제되는 경우 공개강의평가를 통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018.8.24.신설)

② 공개강의평가를 위하여 공개강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개강의평가위원은 해당 교원 포함 내부 교원 3명, 타 대학 교원 1명 및 학생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지명한다. (2018.8.24.신설)

③ 공개강의 주제는 재임용 전공분야에서 공개강의평가위원장이 사전에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2018.8.24.신설)

④ 공개강의 대상자는 공개강의계획서를 사전에 공개강의평가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8.8.24.신설)

⑤ 공개강의 대상자는 선정된 주제로 30분 내외의 발표를 하며, 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공개강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018.8.24.신설)

⑥ 공개강의평가에 불참했을 경우 탈락처리 된다. (2018.8.24.신설)

⑦ 공개강의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은 <별표6>과 같다. (2018.8.24.신설)

⑧ 공개강의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2018.8.24.신설)

⑨ 공개강의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018.8.24.신설)

제28조(재임용의 제한) ① 삭제 (2013.2.25.)

② 삭제 (2013.2.25.)

제 4 절 정년보장임용

제28조의2(정년보장임용)

① 정년보장교원은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한 전임교원을 말한다. (2018.2.27.개정),(2019.2.19.개정)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2016.10.18.개정),(2018.8.24.개정),(2019.2.19.개정)

③ (삭 제) (2019.2.19.삭제)

④ 교수는 만 65세까지 매 4년마다 교원업적평가점수 년 70점 이상 및 연구실적 점수 4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4편 이상이어야 한다. (2019.2.19.개정),(2019.8.21.개정)

⑤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가 제4항 미만일 경우에는 호봉을 정지하며, 호봉이 정지된 교수는 최근 4년을 기준으로 매년 업적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호봉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연구년과 연구비(연구수당 포함) 혜택을 제한 할 수 있다. (2019.8.21.개정)

⑦ 삭제 (2012.12.3.개정),(2018.2.27.삭제)

제 5 절 중심평가 변경

- 제28조의3(중심평가 영역 변경)** ① 교원은 중심평가 영역을 변경할 수 있다. (2022.2.10.개정)
 ② 중심평가 영역에 대한 변경은 교원업적평가관리 규정에 따른다. (2022.2.10.개정)

제 3 장 보직 및 겸직 제한

제29조(보직) 교목처장은 목사로 보하고, 대학원장과 교학처장 및 기획조정처장은 부교수 이상, 교학부처장은 조교수 이상, 문헌정보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차상급자로 보할 수 있다. (2016.3.14.개정),(2016.12.30.개정),(2017.7.17.개정),(2017.8.31.개정),(2018.8.24.개정),(2019.10.11.개정),(2020.4.28.개정)

제30조(보직 임기) 교원의 모든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31조(전보 및 면직)** ① 총장은 모든 교원의 보직을 임기전이라도 전보 및 면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2조(겸직)

- ① 교원은 타 기관에 상근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타 기관에 상근하지 아니하는 직의 위촉을 수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6.3.14.개정),(2018.8.24.개정)
 ③ 본교의 교원으로서 총장직에 취임하는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취임전 소속 학과의 교원으로 복귀한다.

제33조(타교 출강) 교원이 타교에 출강하거나 정부, 기타 기관 등에 비상근 임직으로 위촉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신분 보장

제 1 절 휴 직

제34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4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023.08.02.개정)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3-3-1 교원인사 규정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될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될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2023.08.02.개정)
- 7-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2023.08.02.신설)
8. 관할청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연구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023.08.02.개정)
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2023.08.02.신설)

제35조(휴직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4조 제1호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023.08.02.개정)
2. 제34조 제2호 및 제4호의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023.08.02.개정)
3. 제34조 제3호의 경우는 3개월로 한다. (2023.08.02.개정)
4. 제34조 제5호의 경우는 3년 이내로 한다. (2023.08.02.개정)
5. 제34조 제6호의 경우는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2023.08.02.개정)
6. 제34조 제7호의 경우는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2023.08.02.개정)
7. 제34조 제8호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023.08.02.개정)
8. 제34조 제9호의 경우는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2023.08.02.신설)

제36조(휴직원) 휴직을 원하는 교원은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휴직 인원의 제한) 제34조 제1호 및 제4호의 휴직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총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제38조(휴직 교원의 신분) 휴직 교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제39조(휴직 교원의 복직)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0조(휴직 교원의 효력) ① 휴직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3.08.02.개정)

② 제34조 제1호의 경우로서 공상일 때와 제34조 제5호의 경우로서 학교에서 파견하였을 때는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023.08.02.개정)

③ 제34조 제7호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023.08.02.개정)

제41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015.6.5.개정),(2016.10.18.개정)

② 제3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2023.08.02.개정)

③ 제34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다.
(2023.08.02.신설)

제42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휴직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않아 면직된 교원은 휴직중 급여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 2 절 면 직

제43조(면직)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되는 교원은 면직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이 폐지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직위해제 및 해임은 정관 제 45조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5조(이의신청 및 심사) ① 임용 및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연봉책정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2021.1.18.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한다.

제4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제 규정 및 법인정관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사용하던 본 대학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 ③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3-1 교원인사 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당시 전임강사 근무 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직급 변경에 따른 계약사항은 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재임용시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한 제17조1, 2호에 의한 승진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적용기간에 비례한 연구실적 요건과 개정 후 규정의 적용기간에 비례한 연구

실적 요건을 합산한 연구실적을 최저 연구실적 요건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한 제17조, 제26조에 의한 승진, 재임용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적용기간에 비례한 재임용 최소기준과 개정 후 규정의 적용기간에 비례한 최소기준을 합산한 연구실적을 최저 연구실적 요건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3-1 교원인사 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실적은 2022년 2월 10일 이후분부터 반영한다.

② (경과조치) 제26조2호에 의한 재임용의 경우 연구실적물 인정은 현 임용기간동안의 실적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2016.3.14.개정),(2016.10.18.개정),(2022.2.10.개정)

신임교원 심사규정

1. 신임교수 임용심사는 서류, 면접심사 및 공개강의를 할 수 있다. (2016.3.14.개정),(2018.12.12.개정),(2022.2.10.개정)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고
		일반교원	평가/행정중점교원	
세부전공 적합성(20%)		20	20	
연구실적 (30%)	실적물의 양	10	-	교원업적평가규정(연구) 연구실적 중 논문저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실적물의 질	20	20	
	연구과제 수행실적	(2)	(2)	
교수자질 (30%)	인성	10	10	교수로서의 품성평가(최대 10점)
	논리성 및 태도 (교수 능력)	20	20	교수 능력 및 태도(최대 20점)
경력 (10%)	경력	10	20	일반 교원은 관련 분야의 교육 및 연구경력 수준(최대 10점) 평가관련 교원은 평가 관련분야 근무 또는 보직경력 수준(최대 20점)
글로벌역량 (10%)	글로벌역량	10	10	

2. 심사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개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개강의는 인사위원회나 해당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실시할 수 있다.

나. 공개강의시에 교수, 학생 또는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는 참석할 수 있다.

다. 공개강의의 시간, 장소 등은 해당학과와 교학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6.10.18.개정),(2018.8.24.개정)

라. 강의가 종료된 후 질문할 수 있다.

<별표 4-1> (2016.10.18.개정)

신규채용대상자 심사표

임용대상학과		임용대상전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만 세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경력 및 실적 증명		평가점수
세부전공 적 합 성 (20%)	세부전공 일치도	20	전공 :		
연구실적 (30%)	실적물의 양	10	() 편		
	실적물의 질	20			
	연구과제 수행실적	(2)	() 건		
교수자질 (30%)	인성	10			
	논리성 및 태도 (교수 능력)	20			
경력 및 연령 (10%)	경력	10			
글로벌역량 (10%)	글로벌 역량	10			
합계(100%)		100			
심사위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소 속 : 루터대학교 과

직 급 :

성 명 : (인)

3-3-1 교원인사 규정

<별표 4-2> (2018.12.12.신설),(2022.2.10.개정)

신규채용대상자 심사표 (평가/행정중점 교원)

임용대상학과		임용대상전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만 세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경력 및 실적 증명		평가점수
세부전공 적 합 성 (20%)	세부전공 일치도	20	전공 :		
연구실적 (30%)	실적물의 질	20			
	연구과제 수행실적	(2)	() 건		
교수자질 (30%)	인성	10			
	논리성 및 태도 (교수 능력)	20			
경력 및 연령 (10%)	경력	20			
글로벌역량 (10%)	글로벌 역량	10			
합계(100%)		100			
심사위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소 속 : 루터대학교 과

직 급 :

성 명 : (인)

<별표 5>

공개강의(세미나) 심사표

(교원 신규임용)

지원분야	대학	학과 전공 :	성명	
------	----	---------	----	--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비고
1. 발표(강의) 내용의 논리성 및 충실도		30		
2. 발표(강의) 난이도의 적절성 및 전달능력		30		
3. 발표(강의)의 실제	인품 및 분위기 조성	20		
	언어, 발표력, 답변능력, 반응 등	20		
계		100		

- [주] 1. 세미나(공개강의) 심사 평가는 응모자의 교수자질과 발표력 및 강의능력 위주로 평가
2.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교란에 기재

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소 속 : 대학 학과

직 급 :

성 명 : (인)

3-3-1 교원인사 규정

<별표 6> (2018.8.24.신설)

공개강의(세미나) 심사표

(교원 재임용)

전공		성명	
----	--	----	--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강의내용의 명확성 -강의의 서론과 결론의 명확성 -주제 내용의 명확성	25	20	15	10	5	
교수법의 적절성 -강의내용의 적절한 교수법의 구사 -적절한 매체의 사용	25	20	15	10	5	
강의내용 전달의 정확성 및 논리성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언어구사의 정확성	25	20	15	10	5	
질의답변 능력 -질의에 대한 이해력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	25	20	15	10	5	
합계	점					
특이사항	평가 점수의 합이 40점 미만인 경우 사유기재					
참고사항	1. 평정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2. 각 평가내용별 평점기재는 해당란에 “O”로 기재					

※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소 속 :

성 명 :

(인)